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사각유리등]활용 조명등기구 제작·설치」

위탁사업 공모

과업내용서

2022. .



문화재청 전시홍보과

I. 과업개요

1. 과업명 :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활용 조명등기구 제작·설치」 위탁사업

2. 추진목적

- 사각유리등은 조선왕실 밤 잔치때 사용했던 등으로써 의미와 활용 목적이 뚜렷한 중요 문화재이며, 이를 현대의 기술과 접목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함
- 문화유산이 있는 거리 주변을 조성하여 디자인 거리로 활성화하여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조선왕실에서 사용했던 등을 국민들과 함께 향유

3. 추진방향

- 종로구 일대 경복궁 주변(효자로·삼청로), 인사동 거리 일부, 청와대로변 일대에 신규 야외 조명등으로 설치
-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인 사각유리등을 활용하여 추진했던 결과물을 토대로 종로구일대에 사각유리등 가로등으로 제작·설치

4. 과업 추진 장소

- 장소 : 종로구 일대(경복궁 주변, 청와대 일부)(붙임 3. 참조)
 - 세부위치 : 경복궁 주변 효자로·삼청로·청와대로, 창의문로, 인사동 일부 외 기타 ※ 위치는 종로구 협의로 변동 될 수 있음

5. 과업 주요 내용

- 내용: 조선왕실 사각유리등을 활용한 야외조명등(보안·가로등) 개발 제작
 - ※ '가로등'은 도로의 등, '보안등'은 보행로의 등을 지칭(붙임 1. 설계 참조)



표 1. 국립고궁박물관 사각유리등 설치 모습 및 설계도 참고

- 내용: 조선왕실 사각유리등을 활용한 야외조명등(가로등) 개발 제작·설치
 - *기본 설계도 제공(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 위치: 종로구 내 문화거리 예정(경복궁 주변 효자로·삼청로, 남인사 마당)
- 수량: 최소 350개 이상(확정 구간 4곳)
 - * 1등용 조명 등기구 : 경복궁 주변 청와대 일대(효자로, 삼청로, 의문로)
 - * 2등용 조명 등기구 : 청와대로
 - * 별도: 인사동 일대, 경복궁 내 박물관 주변 또는 기타 공간
 - ※ 설치 수량과 설치 위치에 대한 최종 선정은 예산 범위 안에서 종로구청과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업무 추진 총괄 담당자 선정
 - 총괄 기획자를 통하여 추진계획·설계 및 제작 설치·운영 관리 등을 총괄 담당하여 사업진행과 결과 등 업무보고·협의(문화재청, 종로구청)
- 사각유리등의 디자인(설계)
 - 박물관 소장유물을 활용한 설계
 - 기본 설계도 반영, 또는 새로운 방향성 제시(*환경, 예산, 효율성 등 반영)
 - ※ 단, 발주처와 종로구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어야 함
- 사업 운영 방안 보고
 - 안전하고 편리한 방향으로 설치 및 관리 운영하기 위한 방안 제시
 - ※ 원활한 수급과 유지보수를 위한 나라장터 제품 등록(보류)

6. 과업 기간 : 착수일[또는 약정(계약) 체결] ~ '22년 12월 7일

- 세부계획 및 일정
 - 세부계획

일정	야외 조명기구 제작·설치
8월 2~5주	계획보고 및 일상감사(10일)
8월 5주 ~ 9월 3주	공개경쟁 입찰 공고기간(14일)
9월 3,4주	업체 선정 · 업무 협의
9월 4주 ~ 10월 4주	개발 및 제작
10월 4주 ~ 12월 1주	설치 완료

※ 추진과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완료: (12월 1주) 준공완료 및 홍보게시
- 결과보고: (12월 3주) 업무추진 결과보고

7. 과업예산 : 금 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정)*부가세 포함

○ 예산 세부내역(예정)

- 설치비용 : 55,000천원
- 자재비 및 제작비용 : 193,000천원
- 기타잡비 : 2,000천원(제작설치에 필요한 부자재 비용)

※ 사업 추진시 발주처와 협의에 의해 조정(필요에 따라 조절)

Ⅱ. 과업 세부내용

1. 총괄 담당자 선임

- 선임된 총괄 담당자는 사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위탁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총괄 담당자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사전 협의·선정하여야 하며, 이후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

주요 할 일	
주요업무	야외조명등 설치 기획
세부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조명등 설치 계획과 등 개발을 위한 설계도 작성 · 설계도에 따른 제품 제작과 현장 도로에 설치 · 설치에 따른 운영과 관리 및 유지 등을 추진 ※ 완료 및 필요에 따라 발주처와 종로구청과의 지속적 업무 협의
기타업무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지출, 예산 등 관련 내역, 증빙 및 각종 필요 서류 작성

<개발(설계) 및 설치>

- 발주처에서 설계 완료한 사각유리등 활용 야외 조명등 설계도를 참조하여 기초 설계
- 조선왕실 유물인 사각유리등의 특성을 강조하여 설계(형태, 크기, 무늬, 등)
 - ※ 왕실유물을 활용한 조명이므로 필히, 설계변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 제품 설계 시 전기 자재·부품의 교체가 편리하도록 설계에 반영

<운영 및 관리>

- 설계된 조명등이 원활히 생산될 수 있도록 소재부터 제작과정 기록
- 설치 장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장은 최소화하도록 주기적 관리
- 조명등의 노후로 인한 교체시 수급이 편리하도록 제품 등록
 - ※ 완료된 조명등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

2. 야외 조명등기구 제작 · 설치

가. 제작방향 : 붙임2 참조

○ 설계 :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방안 선정(1~3안 중 선택하여 개발)

- 1안 : 국립고궁박물관이 제공하는 설계도와 동일한 방식의 설계
- 2안 : 환경과 시설 및 운영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 3안 : 제공하는 도면과 새로운 아이디어 접목하여 설계

※단, 방안 선택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할 것

○ 설치위치 : 종로일대 5곳 기타

※설치 전 종로구청과 협의된 장소로 선정, 예산에 따라 추가 위치 선정

3. 조명 설계 · 제작

가. 제작 내용

- 설계도 : 조선왕실 사각유리등 형태의 보안·가로등 설계도 작성(CAD, PDF, JPEG) *등의 형태·구조의 현장 상황에 따라 기둥(암대)도 설계 포함
- 제작 : 지정된 거리에 설계 완료한 조명등을 기한에 맞춰 제작·설치
※설계도 작성과 설치시 종로구청 도로과와 협의 후 진행

나. 조명등기구 제작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협의하여 조정

-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장 제 1절 제 9항 제 2호에 따라 중로(12m이상 ~ 25m 미만 도로) 또는 소로(12m미만 도로)로 기준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 나에 의거, 조명기구의 범위를 적용(빛공해를 최소화)
- 「서울시 야간 경관가이드」(2014년, 2017년 개정)에 의해 서울시 도로 실외 조명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디자인 원칙(권장사항)]

	가로등기구(KS C 3701)	보안등기구(KS C 7658)
노면 휘도	KS C 3701도로조명 기준 적용	
노면 조도	서울시 보안등 설계 관리 기술기준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에

	수립용역 결과 반영		대한 기준 적용
무게(kg)	10이하(종로구 기준)/12(KS기준)		6이하(종로구 기준)/12(KS기준)
색온도(K)	서울시 기준	3,000~4,000	사대문안 3,000~3,500
	종로구 기준	3,000~3,500	2,700~3,500
빛 공해 방지	등기구 형태(컷 오프형) / 상향광 등급(U2(3종지역))		
	-		침입광(HFBS코드) / 차단막 설치가능
연색지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기준 적용 75Ra 이상(서울시, KS 기준)		
등기구 효율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기준 적용 115lm/W 이상(서울시 95/KS85~100)		
IP등급 / 역률	IP등급 66이상(KS기준 65이상) / 0.95이상(종로구 기준)		

<도로 조명등 기준>

- LED 가로등기구(KS C 7658):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등기구(기존 가로등을 교체 설치)
- LED 보안등기구(KS C 7658): 사람이 이용하는 보행자 도로의 등기구(기존 보안등을 교체 설치)
- ※ 빛공해 방지기준 부합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시험기관 배관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조도계산 및 HFBS코드를 사전검토 한다.(*발주처와의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 7조 2항에 의거하여 통행안전 및 빛공해 방지를 최소화 하여야 함

다. LED조명 보급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협의하여 조정

- 조명기구 안전 및 성능에 관하여 KS·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제작 및 구매,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 및 우수 재활용 인증제품을 적용
- 도로조명 제작시 서울특별시 LED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의 LED 모듈·커넥터·컨버터 표준을 적용(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30호)
- 조명기구를 관리·운영하기 편리하고,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 ※세부사항은 「서울시 야간 경관가이드(2020년)」의 제 4장, 3. 도로조명 가이드라인 참조

[휘도, 조도 시뮬레이션 측정값 기준]

종류	항 목	종로구 기준(M3)	서울시 기준	KS 기준
가로등	평균 휘도(cd/m ²)	1 이상	1	1
	종합균제도	0.4 이상	0.4	0.4
	차선축균제도	0.6 이상	0.6	0.6
	눈부심	15 이하	15	15
보안등	평균 조도(lx:룩스)	3 이상	3	3
	균제도	0.15 이상	0.15	0.15

	눈부심	15 이하	15	15
--	-----	-------	----	----

등 배열: 1등용의 경우 한쪽배열 방식으로 설치, 2등용의 경우 중앙배열 방식으로 설치

* 설치 전 현장의 상황에 따라 별도 제작운영 예정

라.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에 따른 요구사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개정 2011. 4. 5)에 의거 환경표지 인증 및 우수재활용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적용 *예외의 경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제6조 예외사항 참조

4. 설치 및 운영

가. 각 현장에 맞는 전기설비 등 설치

- 전기안전과 관련하여 사전점검 등 철저, 조명과 관련한 장비 등을 안전하게 사용 및 설치

나. 운영

- 용역 수행 기간 중 추진 계획(상세한 계획 및 스케줄 등) 수립 후 문화재청의 검수 받아야 함.
- 설계 완료 후 설치 전 종로구청과 문화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용역 완료 전 2회 이상(2일 이상)의 시범 운영기간을 통한 문제점 및 안전 점검 필수
- 하자보수기간 내 문제점 발생시 상시보고 체계 구축하여 대비
- 운영시 필요한 각종 부품과 자재들은 충분히 구비하여 보수시에 적용
- 추진을 위한 모든 시설물과 준비사항은 계약 완료일에 준함.
- 과업수행자는 제안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시행함.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 진행 보고 등

- 과업수행자(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제, 일정표, 참여인력명단, 장비투입내역, 보안서약서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해당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다만,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재청과 합의하여 수행한다.
- 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에 추진하며,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계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내용, 비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모든 주요 과업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을 수행할 수 없거나 업무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에 문화재청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따름.
- 모든 과업은 해당분야 전문가가 수행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은 과업수행자의 고용인이(파견인 등)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과정상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실

을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타인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자의 불완전한 계획이나 업무 미이행 등의 과실로 인하여 문화재청에게 피해가 있을 때 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나. 보안사항

-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자료 등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보안사항 등에 대하여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대외에 발표하거나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이 용역의 중요 사안이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론취재에 대하여는 문화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저작권은 문화재청이 소유하며,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이 용역과 관련한 각종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사항 위반 시 문화재청은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과업 변경 조건

- 문화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계약 해지

-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수탁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임차 등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계약사항, 과업내용 및 기타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 수행 내용, 회사 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계약(약정)해지사항에 해당할 경우 문화재청은 즉시 계약(양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규 준수

- 과업내용서의 내용상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 과업수행자는 문화재청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제적, 기술적 등의 방법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는데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소유권 및 저작권

- 본 사업의 결과물 일체(이미지 포함)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허가 없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없다.

※ 필요시 해당 자료를 문화재청(국립고궁박물관)에 요구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물의 경우 문화재를 활용한 개발 자료이므로 사용 목적과, 사용처에 따라 공문 또는 해당 보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예시: 문화재 주변, 공공장소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만일,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문화재청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을 문화재청에게 양도한다. *관리 운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상

호 협의 하에 제외될 수 있다.

- (초상권) ‘과업수행기관 등 사업자(수탁자)’ 는 이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 및 자료인 사진저작물에 인물이 포함된 경우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초상권에 관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문화재청은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수탁자’ 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기관 등 사업자(수탁자)’ 는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인하여 문화재청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업수행기관 등 사업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업비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 시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국가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원가업체를 지정하여 원가정산,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회계검사 예산 사업비에 포함)
- 사업비는 문화재청과 계약한 산출내역서를 근거로 정산하며, 총액을 초과한 소요금액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 ※ 단,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공문을 통한 행정처리) 실시한 경우, 총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실비정산 할 수 있다.
- 사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청구 시 문화재청을 피보험자로 하는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보증 기간은 계약일로 ~ 1년까지로 한다.(단, 보험료는 수탁기관의 자체예산으로 부담한다).
- 수탁기관은 사업비를 문화재청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운영요원 사례, 출연료 등)는 타 비용에 우선 지출하여야 한다.
 - ※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등을 하고, 세무관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 첨부해야 함
- 수탁기관은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고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집행은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입금증(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지출을 할 수 없다.

- 수탁기관은 문화재청에 직원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특이사항

가. 제작 및 현장 업무

- 설치작업 전 모든 부속자재는 샘플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조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여 승인을 받은 뒤 설치에 임한다.
- 광량을 고루 분포시켜 균일한 빛 밝기가 나오도록 하여 이미지 표현 및 전시품이 안전하게 빛에 노출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제작한다.
- 램프의 수명시간을 확인하고 전시시간 중 램프 교체가 없어야 하며 보행자, 설치 작업자 등을 위해 안전한 조명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안정기는 KS제품의 안정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안이 완성된 자료는 문화재청 감독관과의 협의 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 검토 과정 중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이상으로 인한 문제 발생 혹은 검토 받은 시안(샘플 및 도면)과 결과물이 다른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정·재제작 하여야 한다.
- 배선 위치 및 자재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서 지정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시 시간에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플러그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종로구청 도로과, 문화재청 전시홍보과 협의)
- 배선은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게 정돈 설치되어야 한다.
- 배선의 연결 부분은 누전 현상이 없게 사용하여야 한다.
 - ※ 기타 안전에 관한 모든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기관 등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 설계와 관련한 디자인 등 사업 관련 성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귀속한다.

나. 현장 점검 및 설치

- 현장의 반입은 지정된 장소에 일반 화물로 반입하여야 한다.
- 현장물품 반입 시 **물품목록표**를 작성하여 내부에 반입하도록 하며, 물품반

- 입 사진을 함께 찍어두어 요구시(현장사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운반 시 파손 또는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보양하여 운반하여야 하며, 현장설치 시 시설이 손상되었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지정된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설치하여야 한다.
- 만일,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제작,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설치 완료 후 향후 추진을 위한 샘플제품은 추가로 제작하여 보존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제출한다.(향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점·소등이 원활히 되어야 함)

다. 철거 및 운반 시 유의사항

- 전시물 철거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 반출은 반드시 지정된 폐기물 처리업체가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라. 공통사항

- 과업수행로 인해 종로 거리가 손상되거나 문화재[사각유리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아야 함
- 사전 협의된 제작순서에 의거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 반입된 자재를 분류하여 제작 전 감독관에게 검사를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 검수한 자재는 제작 위치에 이동, 제작 순서의 역순으로 정리, 보관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 설치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가 될 경우, 인제책, 안내물 등을 비치하여 인지 시켜야 하며, 종로구청·문화재청과 필히 협의하며 임의로 추진하지 않는다.
- 설치 시 부주의로 인한 손상제품은 교체·수리하며, 정도가 약한 손상은 감독관의 승인 하에 현장 보수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화재청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내용서에 부합하지 않게 용역 수행하였거나 계약(위탁)내용에 대한 문화재청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 수행이 부진하여 용역(위탁)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

단될 때

마. 기타 사항

- 용역계약(약정)서 및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자구의 해석에 관하여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서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나 수행 중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설치, 철거 및 이전 시 시설의 손상을 가했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 설치될 주변이 문화재 지역인 경우 주변 문화재 건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한다.
- 본 이전설치와 관련하여 사다리·전동리프트, 작업용 공구 등의 안전한 사용 및, 현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내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비치 운영하여야 하고, 현장대리인은 용역 진행시에는 반드시 현장 내에 상주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전시공간이 관람객이 드나드는 문화재 지역임을 감안하여 언행의 조심 및 금연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및 민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조심을 하여야 한다.

4. 과업 성과물 및 보고

가. 주요 성과물 제출

- 설계도 등 기타 인쇄물은 인쇄 전에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성과품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
- 문화재청이 과업 성과품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 완료 후라도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성과물 작성

- 용역 기간 동안 제작된 책자형태의 모든 인쇄물 2부,
- 외장하드 : 최종 데이터 2개[최종결과보고서(PDF, HWP), 진행 과정 촬영 사진(착수, 공정, 완료), 등 용역 기간 중 생산된 모든 파일을 저장]
※ 도면의 경우 CAD파일_버전 11이하, PDF파일, JPEG파일 각각 폴더를 생성하

여 제출

- 최종 결과보고서 : 5부 이상
-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자료 또는 기타자료 등
 - ※ 성과품 제출은 사정에 따라 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다.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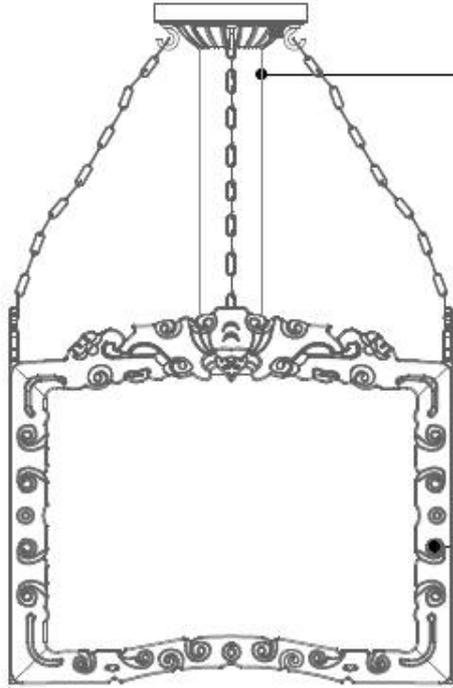
- 착수보고회(사업착수 30일 이내), 1차 중간보고회(11월 중) 최종보고회(12월 초) 등 문화재청과 협의 후 실시
 - ※ 회의 횟수는 추진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시 보고 및 제출 : 최소 2주 간격으로 간이 보고
 - ※ 이메일(wisdomljh@korea.kr)로 공정 사진보고(붙임 4. 사진보고 양식 참조)

- 붙임 : 1. 사각유리등 설계도 1부.
2. 관련 문화재 사진 목록 1부.
3. 설치위치도 1부. 끝.

붙임 1 사각유리등 설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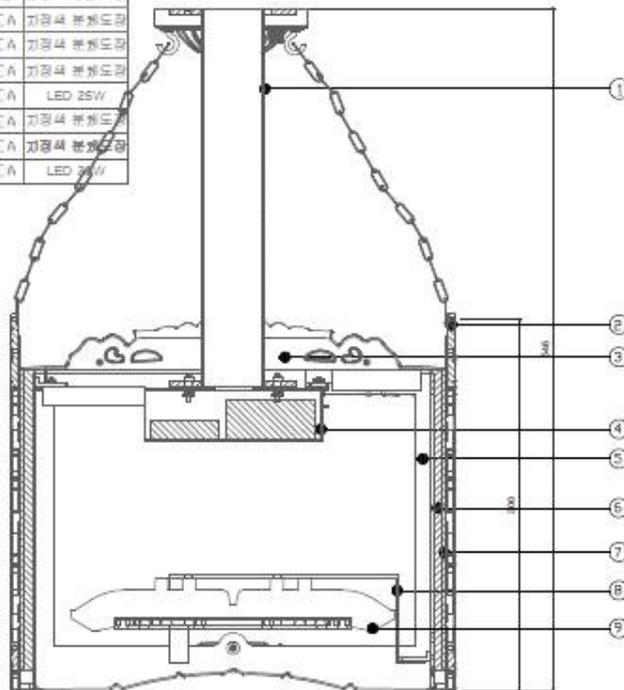
□ 사각유리등 천장등 측면도(위) / 단면도(아래)

품번	품명	재질 / 규격	수량	비고
1	파이프	IRON, Ø50	1EA	지경색 분장도감
2	전통유양장식	AL-D. C, 6T	4SET	지경색 분장도감



3D 가상 구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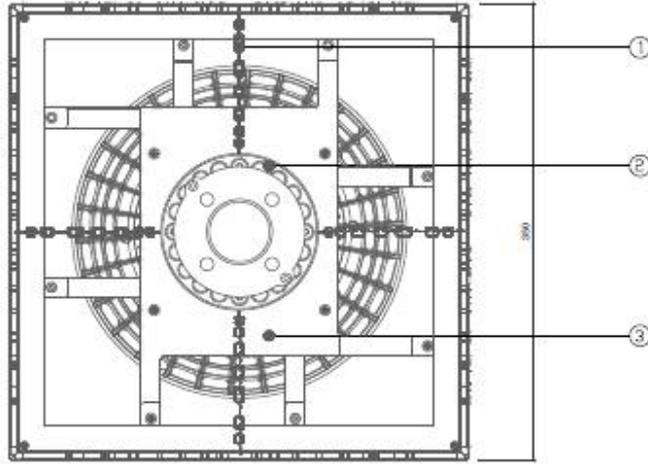
품번	품명	재질 / 규격	수량	비고
1	파이프	IRON, Ø50	1EA	지경색 분장도감
2	전통유양장식	AL-D. C, 6T	4SET	지경색 분장도감
3	프레임	IRON, 1.2T	4EA	지경색 분장도감
4	커버타환	IRON, Ø. 7T	1EA	지경색 분장도감
5	몸개	STEEL, 2T	1EA	지경색 분장도감
6	LED 조명	EDGE TYPE LED, 9T	4EA	LED 25W
7	광학유리	GLASS, 3T	4EA	지경색 분장도감
8	장부 지지대	IRON, 2T	1EA	지경색 분장도감
9	LED 조명	AL-D. C	1EA	LED 25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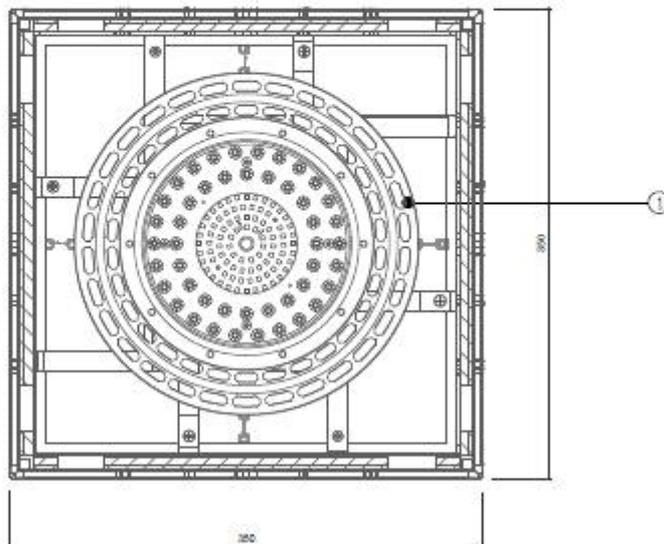
※ 선정 업체에서 현장 방문을 원할 경우 미리 문화재청과 협의 후 가능

□ 사각유리등 천장등 상위도(위) / 단면도(아래)

품번	품명	재질 / 규격	수량	비고
1	천판	AL	4EA	지경색 분체도장
2	후면판	AL-D, C, O, BT	1EA	지경색 분체도장
3	상부 지지대	IRON, 2T	1EA	지경색 분체도장



품번	품명	재질 / 규격	수량	비고
1	LED조명	AL-D, C	1EA	지경색 분체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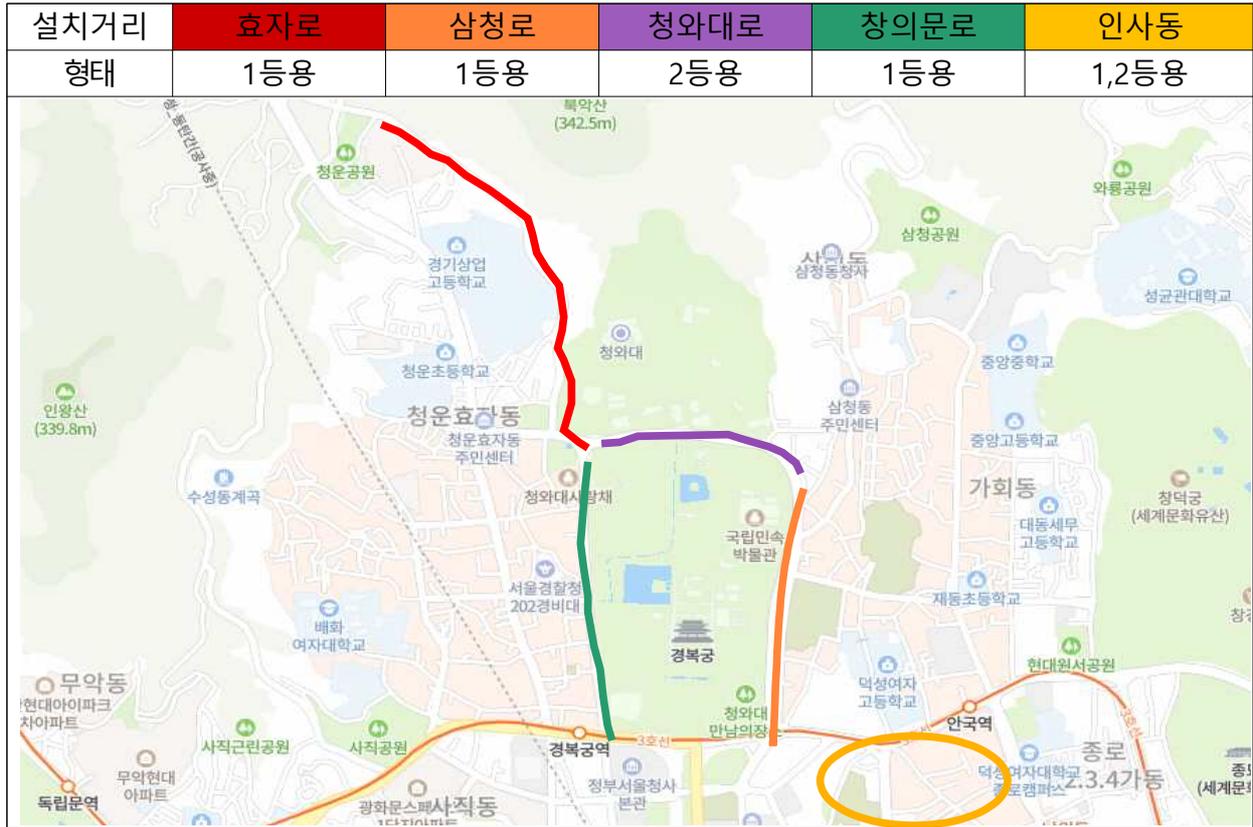


붙임 2 | 관련 문화재 사진

□ 사각유리등 천장등 상위도(위) / 단면도(아래)



□ 사각유리등 천장등 상위도(위) / 단면도(아래)



종로구청과 협의 하에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아래의 문서를 활용하여 제출

사 진 보 고

사 업 명:

사업기간:

내용 / 일자	내용 / 일자
내용 / 일자	내용 / 일자

보고자:

(인) 또는 서명

년 월 일